

제 4 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31

2018강원조정3,4(병합) 각 손해청구

성탄절 연휴 풍경에 대한 스케치 보도를 하면서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민방인 피신청인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가 인파로 북적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뉴스프로그램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시 촬영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보도 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심리 중 중재부는 가벼운 스케치 보도라 하더라도 촬영 및 보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또한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2

2018서울조정26·27 정정·손배청구

업체간 댓글공작 등 경쟁사 비방 행태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대행사를 동원, 주요 포털 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댓글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으며, 보도에 언급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인 업체가 가해자로 인식되도록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경쟁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C 부대표 및 D 전 홍보이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경쟁사 B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DB크롤링, 디도스공격 등에 대해서는 B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악성댓글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하여 심리 중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정대상보도

한때 주요 정치이슈에서 논란을 빚었던 조직적인 댓글공작이 사회계통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인 스타트업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은 도덕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A업체이다.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경쟁사 비방을 목적으로 악성 댓글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유포하는 등 부정 여론을 조장한 혐의로 B업체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럴전문대행 E사를 동원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카페·블로그)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A업체는 전문 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B업체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A업체와 B업체는 현재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댓글공작 혐의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 상위권 주자이자 도덕적 이미지를 구가하던 A업체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기사목록에 [] 라는 제목으로 A업체가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고위임원들을 중심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경쟁사 음해목적 댓글공작을 한 것처럼 묘사하였고, 또한 현재 A업체가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A업체의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A업체가 아닌 B업체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33

2018서울조정1220 손해청구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취지의 기사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신청인과 미성년자인 딸의 사진을 삽입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사진을 삽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기사의 열람·검색을 바로 차단하였고, 뉴스통신사의 사진을 전제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25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4

2018서울조정1294 손해청구

타 방송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원 보도와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모 기업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사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 회사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사내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 소속기업, 퇴사시기 등을 적시하는 등 신청인의 신원이 추정 가능하게 보도하였고, 신청인이 제보하거나 폭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로했다'는 등으로 표현하여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심리 이전에 해당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방송사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원 추정이 가능케 하였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최초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조정사건은 중재부에서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및 기사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되었음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5

2018서울조정1418·1419 정정·손배청구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데 대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사건을 전하면서 해당 유튜버와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보도하였고, 자신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 A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조정에 앞서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고 이름을 수정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6

2018서울조정1450·1451 정정·손배청구

기사와 무관한 요양원을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과 무관하다는 알리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모습 사진을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진에 노출된 요양원은 실제 노인학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이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손해배상과 알리 보도 게재 방안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5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로서 노인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리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돌봄의 탈가속화’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제도의 손발이 되는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고강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차 요양보호사인 ㄱ씨는 지난 4월 노인학대와 공동감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간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을 장시간 잡아두고 강제로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결박·격리시켜 놓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면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있음을 인정했다. 7씨 등 요양보호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을 함께 돌보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민간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요양원 내부 사진 게재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 는 제목으로 노인학대의 원인이 민간요양원들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필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기사 중간 특정 요양원 이름이 노출되는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특정 요양원과 노인 학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37****2018서울조정1489 손해청구**

유명 유튜버 노출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 사건과 관련없는 신청인 스튜디오의 건물 외관 및 내부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를 찾아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촬영, 방송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유포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관 및 내부 일부가 드러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이 방송화면에 보도되는 것을 거부한 촬영 원본 영상을 확인하였고, 양 당사자에게 적절히 합의할 것을 권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피신청인은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8

2018서울조정1606·1607 정정·손배청구

언론사간 조정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사기의혹이 있는 보물선의 인양기업 측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보물선의 인양 기사를 쓴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물선의 인양 관련 보도가 광고 게재와 무관하고, 2건의 광고에 대해 일반적인 광고비를 받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수주하였거나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다
- A일보의 보물선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부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 인양을 담보로 코인을 모집해 논란이 된 B그룹에 대해 ‘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싱가포르 B그룹을 중심으로 다단계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이 돈을 대가로 0000호 인양 관련 보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호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B그룹은 ○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호는 ○함대 소속으로 일본 함대와 해전을 벌이다 침몰한 배다. ○함대는 보급을 위해 육지를 오가며 경리함에 상당한 금괴와 금화, 골동품 등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0000호는 ‘보물선’으로 전설처럼 내려져오고 있다. B그룹



의 발표 후 ○호는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도배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호의 실존 여부부터 보물의 유무, ○골드코인까지 국민들의 이목이 B그룹에 집중됐다. [중략]

결국 B그룹의 ○호 인양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수의 언론은 연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B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도 B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B그룹 ○호 발견 주장 때와 지난해 C그룹의 ○호 인양 시도 보도 행태를 보면 언론 역시 이번 사기 논란에 일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월 ○일자 A일보 ○면에는 [] 기사가 게재돼 있다. A일보는 “최근 다시 ○호 인양에 나선 C그룹은 D건설 전 임원들이 ○년 ○월에 세웠다. C그룹 회장은 D건설 본부장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랬던 A일보가 지난 ○일 C그룹에서 파생된 B그룹이 ○호 발견을 발표했을 당시에 도, B그룹이 ○년 만에 ○호를 ○도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략]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취재를 진행한 모 언론사 취재기자는 본지에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고 전해왔다. B그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역시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A일보의 보도는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다...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은 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고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A일보의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머릿기사 하단 기사목록에 노출하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동일하게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39

2018경기조정179·180 정정·손배청구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한 것에 대해 중재부가 관련 판결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기사열람·검색 차단을 결정, 당사자가 동의한 사례

보도내용

- 특수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건설업체에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뒤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했다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37억 여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전 보도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및 불기소 처분 사실 등을 인지했을 시기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4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자 []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2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3개월 만에 시가 90억 원이 넘는 신축건물을 강탈당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2개월의 이자가 3억 7,500만원이었다. ② 차용금의 이자와 더불어 신축 중인 오피스텔 4개 동을 넘겨주기로 했다. ③ 법무사 사무원 B씨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간 9,000만원을 지급했다. ④ 21억 원을 빌렸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신축오피스텔의 시가는 90억 원을 넘는다. ⑤ 현재까지 매일 5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면서 그 금액만 7억 여원에 달한다. ⑥ A씨 등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⑦ 법무사 사무원 B씨는 법무사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꾸몄다. ⑧ 사채업자의 압박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A씨가 요구하는 소유권말소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였다. ⑨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허위사문서 조작 등 오피스텔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⑩ A씨가 잔금 ○원을 입금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9,000만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3,779,457,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과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사진이 함께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피신청인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계정의 블로그 등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40

2018서울조정1938·193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을 승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잘못 보도하면서 과거 전과기록까지 언급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스포츠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해외 도피중이라면서, 과거의 전과기록과 함께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의 승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과거 사실이 공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오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해당 보도의 복제글의 열람·검색 차단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 차단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 제목의 기사에서 ‘공범은 현재 D국에서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B씨’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가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정정보도문을 전송한다.



사례 41

2018강원조정16, 17(병합) 각 손해청구

신청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보도했으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지역 모 초등학교 입학생 추첨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가 추첨기를 돌리는 모습을 촬영,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진을 각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 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42

2018서울조정2276·2277 정정·손배청구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타 언론사 기사를 전재하였는데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해 정정보도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링거 투약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상급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망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족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뉴스통신사의 보도를 별도의 취재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A씨가 이미 매우 심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방문하였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차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였으며, 2차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
- 시의회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장과 함께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다
- A씨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치료와는 무관하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취지대로 이미 정정보도를 게재하였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손해배상금 200 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당사자 및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추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 제목의 기사에서 B의원에서 수액을 맞다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환자 A씨가 3차병원 후송 중 사망한 데 대해 원장이 사과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유족과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취재 하여 작성한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원장은 “호흡곤란 증세로 4차례 의원을 방문한 바 있고 8월 9일에도 같은 증세로 의원을 찾은 A씨에게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된 수액을 처방하였고, 약 50분간 수액을 투여한 뒤에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한 것이며, ○시 의장은 유족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보도문을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보도문을 전송한다.

**사례 43****2018서울조정2335 손해청구**

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의 SNS 계정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모 배우가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과 함께 ‘보조개 미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름이 같을 뿐 일반인인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실수임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이미 차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44

2018서울조정2399 손해청구

발언 내용을 편집, 보도하면서 실제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중재부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매물이 실제로는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는 ‘광고’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 방영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적절한 방송 편집으로 신청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되었고,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발언내용을 같이 편집하여 신청인이 오해를 받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70 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 건설회사 관계자 : ○○이 저희꺼 되게 많이 팔았어요. ○개월 전에 ○동에 있는거 40개 팔았어요.
- ▶ 리포터 : 그동안 방송한 매물들을 방송한 사람들이 직접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 ▶ 분양업체관계자 : 수수료는 1,200만원을 줘야할 거 같아요.
- ▶ 잠입취재원 : 하나 팔아주면... 데리고 와서 팔아주면 1,200만원. 하나를 팔아주면 1,200.. 어.. 근데 그걸 40채를 팔았다고 하니까 거의 5억.
- ▶ MC : 가까이 되는 금액을 벌었다는.. 수치상으로 얘기가 되는데...
- ▶ 리포터 : 그렇다면 건축주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례 45

2018서울조정2340 손해청구

사건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와 사건 내용이 동의의 범위를 넘어 방영된 데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미제 사건을 다루는 방송 코너에서 사건 피해자 유족을 인터뷰한 후, 대역배우를 활용하여 사건 내용을 방영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를 하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유감을 표명하며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지 사항으로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자 [] 코너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살인사건 피해자 장모 분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그 내용의 방영을 강행하여 해당 가족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최상단 공지사항으로 아래의 글을 게재하여 7일 동안 노출하되, 그 이후에는 일반 게시글로 유지되어 검색되도록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